

농약 등록·관리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OECD의 활동(II)

등록·관리 국제조화 위해 체계적·전략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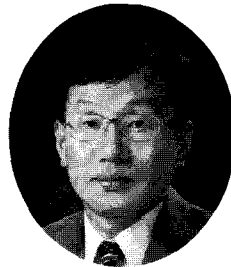
OECD의 모든 활동동향 면밀히 파악, 관계부처 체계적 대응해 가야
'OECD의 세련·과학적 관리국가' 이해 당사자 선택·노력에 달려있어

4) 농약의 위해성 경감조치

OECD에서는 1994년부터 농약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경감시키고자 농약 위해성 경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위해성 경감 관련 활동을 보면 첫째, 위해성 경감 성공사례 정보 교환 촉진 둘째, 위해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셋째, OECD 비회원국에서 제기되는 특별사안 처리건 등 3가지 분야로 집약할 수 있다

가) 위해성 경감 성공사례 정보교환 촉진

잘 아시다시피 농약은 본질적으로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로서 의도적으로 환경중에 살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해성을 지니고



신진섭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

있다. 때문에 어느나라이든지 농약살포로 인한 위해성을 경감시키려는 각종 수단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각국에서 농약 위해성을 경감시킨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우수한 경감

사례가 다른 나라에게도 전파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OECD에서 위해성 경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한 첫 번째 활동은 OECD 회원국 및 FAO 회원국 중 일부국가에서 시행된 위해성 경감조치 사례의 조사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1996년도에 발간된 바 있다. 이 위해성

경감조치의 예는 농약관리법령의 강화, 안전한 농약의 등록절차 간소화, 환경중 농약방출 경감을 위한 국제적 조약 참여, IPM의 촉진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한편 OECD에서는 위해성 경감을 위한 각종 수단 개발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샵도 추진하고 있다. 1995년도에는 스웨덴의 Uppsala에서 “위해성 경감에 관한 워크샵”을 FAO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참가국을 대상으로 위해성 경감조치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또 1998년도에는 스위스의 Neuchatel에서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및 위해성 경감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IPM이 위해성 경감 수단으로의 가능성 등을 따져본 적이 있다.

아울러 이 워크샵의 후속조치로서 IPM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생물농약의 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페로몬, 미생물농약, 천적 등 생물농약의 등록시 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농약위해성 경감조치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는 각국에서 여러 병해충방제 시스템에 대한 비용과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워크샵이었다. 여기에서 IPM은 영농에 있어서 위해성 경감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었다.

농약작업반회의에서는 회의안건으로 회원국에서 농약으로 인한 위해성을 경감시킨 성공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농약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

음을 보고한 바 있고, 미국은 새로이 등록되는 신농약 중 저위해성농약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여 등록시켜 주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저위해성농약의 등록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나) 농약 위해성 측정 지표개발

OECD에서는 1997년도에 농약의 위해성 경감정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농약 위해성지표(Pesticide Risk Indicator)의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 국에서 취한 농약 위해성 경감조치의 실효성을 경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Uppsala워크샵에서 제안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농약 위해성 지표는 수계위해성(Aquatic Risk), 육상생물위해성(Terrestrial Risk), 사람 건강위해성(Health Risk)의 3가지 소지표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우선 개발이 용이한 수계위해성지표(ARI) 개발 프로젝트는 2002년 상반기에 완결, 그 수단이 개발되어 OECD 웹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 2002년 5월부터 육상생물위해성지표(TRI)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다) 개발도상국의 잔여 낡은 농약(Obsolete Pesticides)의 처리

2000년 OECD에서는 FAO, UNEP와 공동으로 “낡은 농약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는 예전에 위생해충방제 등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원조해 준 농약들이 적절한 창고가 아닌 곳에서 대용량 드럼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 이들의 유출 사고위험성이 상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농약의 처리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이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처리지침이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5) Biocides(비농업용 살생물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 농약작업반회의에서는 1992년부터 농약프로그램을 맡아 추진하고 있던 중 1996년부터 농업용 이외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생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농업용 살생물제인 소위 Biocide에 관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Biocide에 대한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농약이 등록 및 관리의 체제면에서 잘 관리되고 있으나 Biocide의 경우 사용처와 사용량은 방대하나 관리는 농약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모델로 따라가기 위해서 농약작업반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우선 OECD에서는 유럽에서 철도침묵에 널리 사용되는 목재방부제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목재방부제 환경중 노출평가 방출시나리오 문서(ESD)"를 개발 중에 있으며 방출시나리오 문서시안(제5판)이 회원국 전문가그룹에 배포되어 검토 중에 있어 2003년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목재방부제에 대한 ESD개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후속사업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방오페인트에 대한 ESD개발을 착수하여 2005년 완결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2003년 6월 농약작업반회의에서는 Biocide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진하고 예산

상의 이유로 Biocide활동의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Biocide의 활동이 현재처럼 농약작업반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상위의 합동회의(Joint Meeting)에서 다루어 질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국제적 조약의 향후 전망

OECD에서 농약프로그램을 착수한지 만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동안 OECD에서 추진된 농약관리의 국제적 조화활동의 실적은 미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14차 농약작업반회의에서 세계농약공업협회(CropLife International)는 농약 등록자료 평가절차에 대한 OECD의 국제적 조화활동의 진척이 미진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농약작업반회의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작성토록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6월에 개최된 제15차 농약작업반회의에서는 향후 10년의 비전 초안이 제시되어 논의되었다. 이 비전문서에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농약 프로그램의 비전, 세부목표, 추진일정, 성과지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농약 규제관련 국제적 조화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째 농약 등록신청 회사가 작성한 기본적인 농약등록신청서류(Core Data Set)는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물론 국가별 특성에 따라 특정 보완자료는 국가별로 상이

하게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둘째 농약의 등록시 OECD 어떤 국가(또는 지역)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Monograph)는 다른 나라(또는 지역)에서 등록시에 그대로 이용될 것이다.

셋째 OECD 국가간 농약 등록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특정 신 농약이 범세계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등록신청서류(dossier)로 전 세계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한 개의 검토보고서(monograph)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로 농약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농약등록신청자는 신 농약 등록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어 보다 신속하게 전세계에 등록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농약사용자(농업인)는 병해충 방제에 있어 신농약을 보다 쉽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약잔류수준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소화 될 것이고 농약 규제당국은 농약의 규제결정에 보다 과학적인 결론에 용이하게 이를 수 있으며 등록신청 자료의 평가에 훨씬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금후 우리의 대응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는 농약 등록 및 관리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그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척되리라고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이고 전

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대응전략은 우선 OECD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권고하는 대로 농약관리를 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나라도 어느새 농약관리면에서 선진국이 되어 갈 것이고 이웃 나라 일본과도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선 국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대상은 시험기준과 방법, 등록요구자료, 등록신청서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위해성 평가방법 등이 될 수 있다.

이중에서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약 등록자료 검토보고서(Monograph)의 작성 및 회원국간 교환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약등록자료 평가요원의 평가기술 향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농약검토 관계관들이 농약 위해성 평가관련 국제 워크샵 및 연수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석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을 게을리 할 때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는 무늬만 OECD국가이지 내용은 여전히 세련되지 못한 개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연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세련되지 못할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엿한 OECD 국가로서 세련되고 과학적으로 농약을 관리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는 농약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즉, 농약업계 및 농업인, 소비자, 농약관리당국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농약정보**